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확인 –

2017. 6

※ 본 안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KCMA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 화학물질 확인 제도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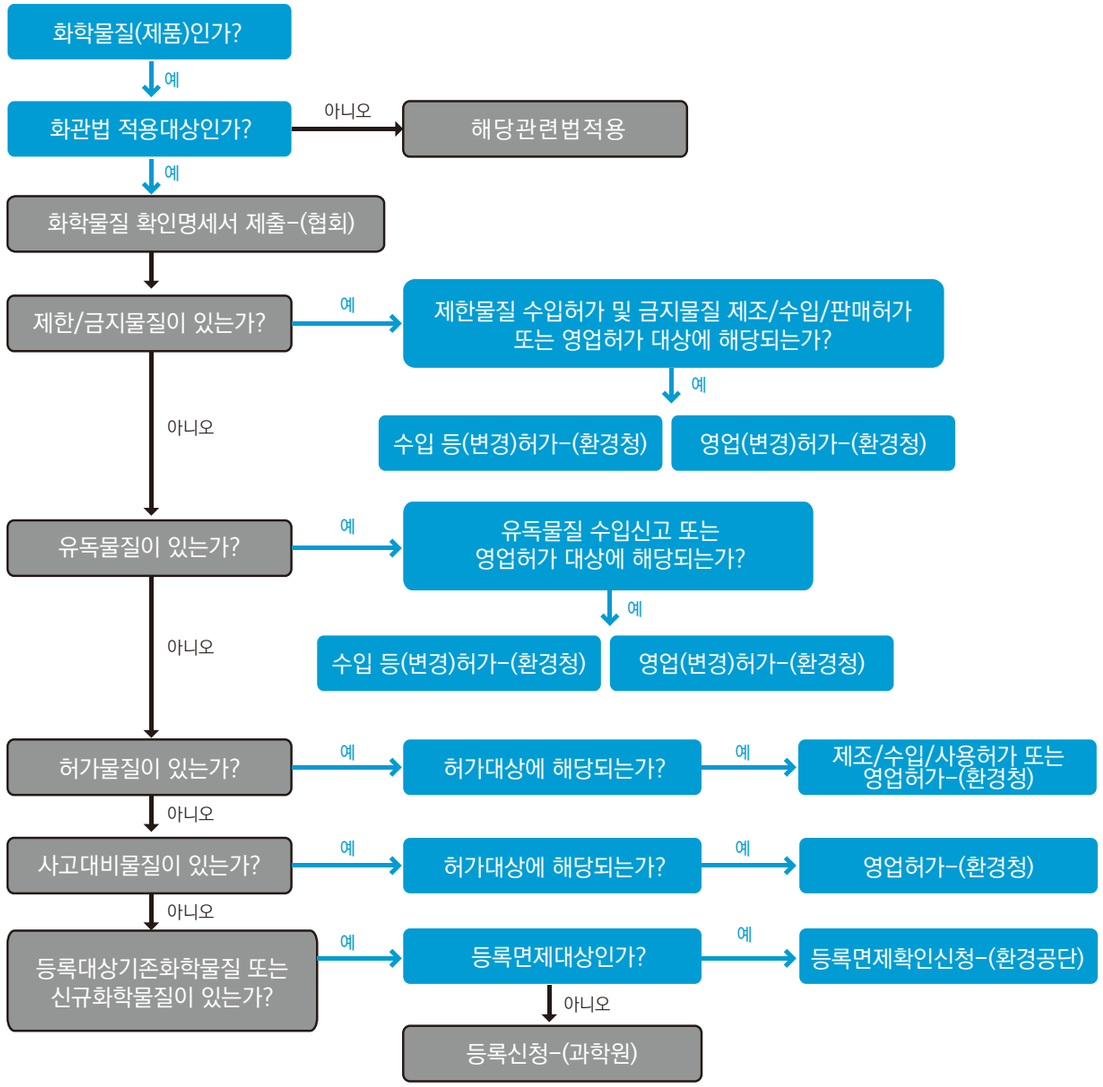

[용어정리] 환경청 : 유역지방환경청 / 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 / 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업무별 관할기관

구분	업무명	처리기간	관할기관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유독물질	수입신고	2일	유역지방환경청
	수입변경신고	2일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	15일	
	변경허가·변경신고	10일	
	수출(변경)승인	90일(2일)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허가	20일	
	제조·수입·사용재허가	10일	
제한물질	수입허가	7일	
	수입변경허가·변경신고	5일	
	수출(변경)승인	90일(2일)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영업허가	15일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10일	

※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등록면제는 『화평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제도 이행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시험용 · 연구용 ·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이란?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규제대상 화학물질이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제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 단, 제조의 경우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제출 횟수

동일 제품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단, 구성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
※ 동일제품명이라도 수입국만 다른 경우 현재는 추가제출을 요구하지 않음(‘16.9월 기준)

■ 법 적용제외(제출제외) 화학물질

아래 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원제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화관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화관법』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제도 이행

■ 제출 면제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로서, 전화기, 완구, 컴퓨터 등이 여기에 포함됨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2015.9.1., 제정)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함
예)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

■ 제출 방법

-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방배동, 유니온빌딩)
-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 www.ols.kcma.or.kr 접속 – 로그인후 서식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요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2)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조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3)

제조 (수입) 제품명세	①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확인방법	[ ] 성분명세서 [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4)

수입제품 (상품)정보	⑦모델 · 규격	

(5)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전자우편

(6)

⑧ 확인 내용 (함유여부 / 구분)		있음		없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7)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요령

(1)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체크

(2) 제조(수입)자 :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수입)자의 내역을 기재

- 제조자 :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 수입자 :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제조(수입)제품명세

- 제품명(상품명) : 제조의 경우 제조된 제품명, 수입의 경우 수입하는 제품명을 기재.
  다만, 첨부서류의 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수입하는 제품은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제품명 입력 불가)
- 수입국 : 세관 수입신고서(면장)상의 적출국을 기재
- HSK No. : 수입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서(면장)에 명시할 관세·통계통합 분류표의 10자리 품목번호(HSK No)를 기재
  ※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바람
- 확인방법

성분명세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	확인관련서류제공자
제조(수출)자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아 확인한 경우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대신하여 ⑧란의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성분명세서(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등을 적은 서류. 뒷면 성분명세서 예시 참조.

(4) 수입제품(상품)정보

- 모델 · 규격 :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기재 (단순히Kg 또는 powder 등 단위규격 또는 성상만 기입하는 것은 아님)

(5) 확인관련서류제공자

- 위의 “제조(수입)제품명세” 내역의 “⑥ 확인방법” 중 “확인관련서류” 란에 체크한 경우에는 확인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한 자의 상호, 담당자 정보 등을 기재

(6) 확인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함

(7) 제조(수입)자의 명판·직인이나 서명(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성분명세서 예시

2.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임
※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

■ 제조(수출)자가 전성분 및 함량을 모두 밝힌 경우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QuRar 4040-a(Product name)

Chemical name	CAS No.	Content
Maleic acid Monobutyl ester-styrene polymer	25215-62-7	42%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polymer with styrene and 1,2-ethanediol	27881-32-9	3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23%

Best Regards,

Name :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 이 경우 함량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성분명세서 예시

■ 제조(수출)자가 전 성분을 공개하였으나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함량 정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단,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시 함량 또는 함량범위 공개 필수)

KASMI Ltd.
1-21-7, Toranomon Minato-Ku, Tokyo 105, JAPAN
Tel : 03-3592-2228
Fax : 03-2592-2230

LSB-404052

Decanoic acid octyl ester	2306-92-5
Methylphenylsilane	766-08-5
1,2,4-Triazole-3-carboximide	3641-08-5
Ammonium hexafluorotantalate	33380-11-9

We certify that the above product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and does not have any other composition.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Name of Department :
DATE :

※ 비고

1.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함량을 대신하여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문구로 갈음할 수 있음
2.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밝혀야 함(기준고시 함량 미만일 경우도 이에 해당함)

*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화학물질에 대하여 정확한 함량 대신, 함량범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유독물질 등 규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예) 수산화나트륨 유독물질 고시 정보 : 수산화나트륨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① 수산화나트륨 〈 3% (유독물질 고시함량 미만임이 명확)
② 수산화나트륨 4~7% (유독물질 고시함량 판단이 어려움)

확인서 예시

■ Letter of Confirmation(LOC)

To whom it may concern:

Letter of Confirmation

Product Name : .....

Relying on the Certificate of Composition of the above-identified product, I/we hereby confirm that the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regulated chemical substance(s) as its component(s).

Regulated chemicals	CAS No	Chemical Name	Content(%)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Non phase-in substance(s)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we confirm that all components of the product, excluding the above components, are not designated as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non phase-in substances, toxic substances,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restricted substances, prohibited substances,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regulat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Law, and have been listed in the Korea Existing Chemical Inventory.

which checked at ncis(http://ncis.nier.go.kr).

Date :
Sincerely yours,
Name : .....(Signature or Seal)
Title : Name of Department :
Company : Address:
Tel : Fax :
E-mail

■ 용어설명

- Phase-in substance(s) subject to registration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Non phase-in substance(s)
  신규화학물질

- Toxic substance(s)
  유독물질

- Substance(s) subject to authorization
  허가물질

- Restricted substance(s)
  제한물질

- Prohibited substance(s)
  금지물질

-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사고대비물질

※자세한 용어 설명은 16page 참고 바랍니다.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

① 인터넷 주소창에 http://ncis.nier.go.kr/ 입력

- NCIS(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배너 선택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② 검색방법

※ 제조 · 수입한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명, CAS No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외국의 제조(수출)자에게 소개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영문 메뉴 안내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

③ 검색 결과 확인 방법

※ 기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정보 확인

-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검색 결과가 있어도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로 판단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될 경우, 영문명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규제대상 화학물질 확인방법

포르말린(Formalin) 목록

☑ 전체정보 ☐ 물질번호 ☐ 일반정보 ☐ 함량정보 ☐ 고시정보 ☐ 원문DB자료
☐ 관리번호 ☐ 물리화학적특성 ☐ 환경거동 ☐ 생태독성 ☐ 인체건강독성 ☐ 발암성분류
☐ 물질안전정보

체크박스 선택시 해당 항목에 대한 PDF변환 및 인쇄 가능 PDF 인쇄

▪ 물질번호

기존 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대량생산 화학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로테르담협약 물질
KE-17074	97-1-345	06-5-5		✓	1	✓		

대량생산화학물질은 OECD회원국 별로 연간 천톤이상 생산, 수입되는 화학물질로 기존화학물질 해당여부 판단과는 별개임.
즉, 대량생산화학물질에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 기존화학물질 아님.

▪ 일반정보

영문명	Formalin
국문명	포르말린
영문유사명	Formaldehyde
국문유사명	폼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포름올; 메탄알; 포르말리트; 포름알데히드용액

CAS번호	분자식	구조식	분자량
50-00-0	CH2O		30.03

▪ 함량정보

물질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제품) 함량정보	금지 또는 제한내용
유독물질	97-1-345	포르말린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제한물질	06-5-5	폼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용어정의

■ 화관법 제2조

1. **" 화학물질"** 원소 ·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2.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3. **" 허가물질"**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5.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6.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화학물질

7.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화평법 제2조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2.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화관법』 및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전자민원서비스(http://ols.kcma.or.kr/)내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관련서식 (2017.05.30.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제조 / [ ]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조(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제조(수입) 제품명세	①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확인방법	[ ] 성분명세서 [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상품)정보	⑦모델 · 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전자우편		

⑧ 확인 내용	구분 \ 함유여부	있음		없음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유독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조(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관련서식 (2017.05.30. 개정)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1부

작성방법

1.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 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7.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8.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9.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0. ⑧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확인서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관련서식 (2017.05.30.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 · 규격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확인신청 내용	[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유독물질 해당 여부 [ ] 허가물질 해당 여부 [ ] 제한물질 해당 여부 [ ] 금지물질 해당 여부 [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 귀하

210㎜×297㎜[백상지 80g/㎡]

관련서식 (2017.05.30. 개정)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 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5. ⑤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인

MEMO

KCMA
우)0667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8-7(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6/8F
Tel. 02)3019-6703 Fax. 02)587-2204 www.kcma.or.kr